의안번호 2209889 의 뢰 인 주철현의원 회 답 일 2025.5.19. 추계번호 25B2350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. "해운항만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함 라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<신설> 마.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이용 하여 무역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<신설> ※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추가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□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추가(안 제2조)
 - 개정안은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

2조제4호에 따른 예선¹⁾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및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형선박²⁾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임

- 현행법 제11조³)는 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의 업무를 해운항만 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,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 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으로 정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해운항만업의 정의가 확대되면 공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
- 현행법 제12조제2항4)은 공사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보

- 2)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1. "소형선박"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.
- 3)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1조(업무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 - 1.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
 - 2. 선박, 항만터미널 등 <u>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</u> 채무보증
 - 2의2.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, 항만터미널 등 <u>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</u> 보증
 - 2의3. 긴급한 경제적·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</u>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
 - 2의4.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
 - 3. <u>해운항만업 관련 채권·주식의 매입 및 중개</u>
 - 4.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및 그 수탁
 - 5.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, 채무보증
 - 6. 「해운법」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
 - 7.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
 - 8.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 - 9.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
 - 10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
 - 1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
 - 12.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
- 13.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4)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
 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- 2.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 - 3.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
 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
 -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
 - 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하고도 <u>부족한 금액</u>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.

^{1) 「}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4. "예선"(曳船)이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(曳引船)(이하 "예인선"이라 한다)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(離岸)·접안(接岸)·계류(繫留)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.

전할 수 있도록 하고, 제15조⁵⁾는 국가가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, 제16조⁶⁾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의 범위에서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손실 보전이나 상환 보증 사례는 없었고,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(231억원),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(75억원) 등 2025년 기준 313억 5,600만원의 비용 보조를 하고 있음

[표 2]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등 현황(2025년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업명	2025년 투입예산	
1	수출입 물류 공공·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	706	
2	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	23,050	
3	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	7,500	
4	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	100	
	합계	31,356	

자료: 해양수산부

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확대된 업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,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의 보전, 공사의 차 입금에 대한 보증 수요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규모·시기 등을 합리 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^{5) 「}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5조(상환 보증) <u>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</u>다.

^{6) 「}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6조(비용의 보조 등)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</u> 제11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<u>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</u>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		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		

[참고자료]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주주 현황

(2024.12월말 기준, 단위: 주수, 원, %)

주주현황		수량	지분금액	지분율	지분율 (배당기준)	
정부	배당주식	기재부(일반회계)	249,297,013	1,246,485,065,000	39.77	39.77
	배당주식	해수부(일반회계)	69,164,626	345,823,130,000	11.04	11.04
	소 계		318,461,639	1,592,308,195,000	50.81	50.81
정부 외	배당주식	한국산업은행	130,392,669	651,963,345,000	20.80	20.80
	배당주식	한국수출입은행	109,557,908	547,789,540,000	17.48	17.48
	배당주식	한국자산관리공사	20,834,757	104,173,785,000	3.32	3.32
	배당주식	기타(해운사 등)	47,528,086	237,640,430,000	7.59	7.59
	소 계		308,313,420	1,541,567,100,000	49.19	49.19
	헝	계	626,775,059	3,133,875,295,000	100.00	100.00

자료: 해양수산부